

## 6 자동차의 주차 장소에 대해서

현영주택에서는 입주자가 단지내 주차장을 계약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계약한 장소 이외의 주차는 금지되어 있습니다.

주택 앞의 도로나 주차 할 수없는 장소에 주차하는 것은 소방차나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.

또 외래(外来:가이라이)용 주차장은 현영주택의 고객전용 주차공간 입니다.

고객전용 주차장을 이용하실 때에는 자치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자치회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주차했을 경우 단지에 오시는 손님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. 자치회의 허가없이 주차하지 말아 주십시오.